

瑞山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9. 7. 23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9. 7. 23
- 라. 上程日字 : 1999. 7. 27

2. 提 案 說 明 要 旨 (提 案 說 明 : 稅 務 課 長 安 光 來)

가. 提 案 理 由

- 서산시수입증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중 판매인 지정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 규제사항이 많아 지정을 용이하게 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 要 骨 子

- 수입증지 요금계기관리 책임공무원과 판매인 지정시 자격·신용·결격요건을 판단하는 관련조항 삭제
- 판매인 지정신청시 인감등 첨부사항 및 의무부과 관련조항 삭제

- 판매인의 위치·취소·승계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사항등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
- 판매인에 대한 변상책임 및 수익금 관리요건 등의 규정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삭제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의 조제 및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입증지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인 지정신청에서 취소까지의 사항으로
 - 판매인의 자격, 지정신청시 불필요한 증빙서첨부, 의무부과, 위치, 수익금관리등 판매인이 스스로 판단할 부분까지 불합리하게 규제되었던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24 호
의결년월일	1999. . . (제 회)

서산시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7. 23 .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
----------	----

제출년월일 : 1999. 7. 23.

제출자 : 서산시장

1. 개정이유

- 서산시수입증지조례가 불필요한 행정 규제사항이 많아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2. 주요골자

- 가. 수입증지 요금 계기관리 책임 공무원과 판매인 지정시 자격 및 신용을 판단하여 판매인을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관련조항 삭제 (안 제 8조).
- 나.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판매하는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별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관련조항 삭제 (안 제9조).
- 다. 판매인 지정신청시 인감계, 제정보증서등의 관계증빙서를 첨부케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관련조항 완화 (안 제 10조).
- 라. 판매수익을 판단하여 판매인 지정신청을 함으로 판매인의 의무부과 사항인 관련조항을 삭제 (안 제11조).
- 마.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관련한 조항을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토록 완화 (안 제12조).
- 바. 판매소의 위치 규정은 민원인을 고려 설치규정을 두었으나 민원공무원이 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조항 삭제 (안 제13조).
- 사. 지정의 취소, 판매인의 승계,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사항은 중복된 조항이 있으므로 삭제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자. 변상책임 규정은 판매인에 대한 책임으로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8조).
- 차. 판매수익금 관리 요건을 별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관련 조항 삭제 (안 제22조)

3. 참고 관련자료

- 가. 근거법령
 - 서산시수입증지조례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없음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지정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를 “지정신청서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지정신청서·재정보증서·출납원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사유발생 예정일 10일 이내에”를 “지체없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일 이내에”를 “지체없이”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수입증지 요금 계기관리 책임공무원과 판매인 지정) ① (생략)</p> <p>②시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자 중에서 증지 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직장새마을 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 (이하 “직장 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수 있다.</p> <p>④직장금고에 판매인을 들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 한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수 있다.</p> <p>⑤ (생략)</p> <p>제9조(판매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p>제10조(판매인지정신청)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지정 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읍.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 (----- -----) ① (현행과 같음) (삭제)</p> <p>(삭제)</p> <p>(삭제)</p> <p>⑤ (현행과 같음) (삭제)</p> <p>제10조(판매인 지정신청)① ----- ----- ----- 지정신청서를 ----- -----</p>

현행	개정안
<p>②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금고 이사장, 직원 공제회장 등 직원 복지회 회장(이하 “이사장”으로 한다)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 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삭제)</p>
<p>③ 민원공무원이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 재직보증서, 출납원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 -----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판매 장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표찰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②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12조 (판매인의 명의, 위치 변경, 판매 폐지) ①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10일 이내에 별지 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p> <p>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수입 증지 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 또는 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 ----)① ----- -----지체없이----- ----- -----</p> <p>② ----- -----지체없이----- ----- -----</p>

현행	개정안
<p>제13조(판매소의 위치) 증지 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내에 증지 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 금고는 제8조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p>	(삭제)
<p>제14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판매인으로부터 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② 지정판매인이 이조례를 위반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p> <p>③ (생략)</p>	<p>(삭제)</p> <p>(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삭제)
<p>제16조(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 관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자체없이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매인의 판매장소(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 2. 판매인이 사망한 때 3. 판매인이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소가 불명한 때 4. 판매인의 무능력자가 된 때 	(삭제)
<p>제18조(변상의 책임)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p>	(삭제)

현행	개정안
<p>제22조(판매수익금 관리) ①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금고설치 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 규정에 의한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위한 상조금 지급방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따라 정 하여야 한다.</p>	<p>(삭제)</p>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이 서산시의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오니 판매인으로 지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서 산 시 장 (읍. 면. 동장) 귀하